

2025년 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재공고 1개 분야, 총 16명)

|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
| 인턴02 | 일반행정 | 16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충북 청주시)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5. 3. ~ '25. 9. (6개월)
 - ※ 근무시작 예정일은 '25. 3월 예정이나, 지원자 희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5일,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 수) 월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주요 업무 |
|------|-------|---|
| 인턴02 | 일반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식의약 정책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과정 참여 ○ 기타 회의, 행사 준비, 정책홍보 지원 등 |

※ 주요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근로계약 체결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우대 및 가산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 응시제한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규정 준용)
- '23~'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회 이상(타부처 포함) 참여한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채용분야 | 우대 요건 | |
|---|----------------------|--|
| 일반행정 |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 기사 | 정보처리 |
| | 산업기사 | 정보처리 |
| | 기능사 | 정보처리 |
| | 기타 |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워드프로세서(등급 통합 이전 자격증은 1급에 한함) |
| *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 |

다. 가산요건

| 구분 | 내용 | 적용 |
|-------------|--|--------------------|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1, 2, 4호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0%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동법 제29조제1항 제3, 5호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10.(월)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및 나라일터에 면접시험일정 등 공지 예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평가방식)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
-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5. 2. 18.(화) ~ 2. 25.(화)
- 원서접수 : 2025. 2. 18.(화) 16:00 ~ 2. 25.(화) 16: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5. 3. 10.(월)
- 면접시험일 : 2025. 3. 13.(목)
 - ※ 면접시간,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5. 3. 20.(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 시스템(<https://employ.mfds.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원서접수 : 2025. 2. 18.(화) 16:00 ~ 2. 25.(화) 16:00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 필수 제출서류 첨부 누락 시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 ④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졸업증명서 사본, 어학점수 증빙자료 사본, 자격증 사본 등
- 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주의사항

- 가. 제출 서류 중 ①, ②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기존 참여이력 확인을 위해 ③번 서류 반드시 제출
다.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④, ⑤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아래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초본(필수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4호)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제출, 별지서식 제5호)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 20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2회이상(타부처 포함) 참여한 경우 채용이 제한됩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2 채용분야 : 일반행정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⑦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 제출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 | | | | | |
|------|--|------|--|------|--|
| 응시번호 | | 지원코드 | | 채용분야 | |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개인정보(학력·자격증 등) 확인기관 |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제24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
|--|---|
|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p> <p><small>*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small></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small>*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small></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 해당 <input type="checkbox"/> |
|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 해당 <input type="checkbox"/>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